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6일, 김소희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6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1]에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2]에 따라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의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평가를 포괄하고 있으나, 예측 시나리오 기반이 미비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재해위험 전망이 부재[3]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향후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기후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025.7.29. 98p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농업, 수자원, 보건, 산업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리스크 평가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4]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더해 동법 제10조[5]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조사·

---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6]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준비 등 절차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 이후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4.9.12., 의안번호 2203992)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 조항에 '시나리오'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 명확화를 위해 시나리오 문구를 조정할 필요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